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 식별명 : WT1500
 다른 식별명 : 4025331468103; 4025331490104; Permahyd Hi-TEC WT1500 Ultra Deep Black
 최초 작성일자 : 9/23/2024
 버전 : 14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알려진 사용방법 : 코팅 용품 - 전문가용.
 권장되지 않는 사용방법 : 산업용, 숙련된 전문가 전용. 판매용 또는 소비자용 아님.

다. 수입자 / 공급자

: 엑셀타 코팅 시스템즈 코리아 유한회사
 경기도 이천시 원적로 290번길 125

제품 정보 : +82 31 640 8766
 긴급전화번호 : +82 31 640 8780 (with hours of operation)
 003-0813-2549 and 080-822-1374 (with 24hours)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생식독성 - 분류 1B
 이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



신호어 : 위험
 유해·위험 문구 : H360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 문구

예방 :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십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 보호의와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대응 : P308 + 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 조언 또는 치료를 받으십시오.
 저장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십시오.
 폐기 :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알려진 바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조제품 : 혼합물

성분명	관용명	식별자	%
아밀 알코올	N-PENTANOL	CAS: 71-41-0	5 - <10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CAS: 107-98-2	3 - <5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DI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CAS: 34590-94-8	1 - <3
CHROME(III) COMPLEX BLACK DYE	CHROME(III) COMPLEX BLACK DYE	CAS: 117527-94-3	0.3 - <1
N,N-dimethylisopropylamine	2-PROPANAMINE, N,N, DIMETHYL	CAS: 996-35-0	0.1 - <0.3
N,N-다이메틸아미노-2-에탄올	N,N-DIMETHYLETHANOLAMINE	CAS: 108-01-0	0.1 - <0.3
2-부톡시에탄올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CAS: 111-76-2	0.1 - <0.3

공급자의 현재 지식범위 및 적용가능한 농도내에서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분류되어 이 항에 보고되어야 하는 추가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작업장 노출한계의 자료가 있다면 8항에 기술되어 있음.

4. 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즉시 다량의 물로 가꿈 윗 눈꺼풀과 아랫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씻어낼 것. 콘택트 렌즈의 유무를 확인하여,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거할 것. 적어도 10분 동안 계속 세척할 것. 자극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다량의 물로 오염된 피부를 씻을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을 것. 오염된 옷을 벗기전에 옷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거나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적어도 10분 동안 계속 세척할 것.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의복은 재착용 전에 세탁할 것. 신발은 재사용 전에 완전히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 다. 흡입했을 때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호흡하지 않거나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호흡정지가 일어난 경우, 훈련 받은 사람이 인공호흡 또는 산소 공급을 할 것.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하면 구조 제공자가 위험할 수 있음.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만약 의식이 없으면, 회복자세(recovery position)를 취하게 하고 즉시 의료 조치를 받을 것. 기도 확보를 유지할 것. 옷깃, 넥타이, 벨트, 허리띠 등과 같이 조이는 것들을 느슨하게 할 것.
- 라. 먹었을 때 : 입을 물로 세척할 것. 의치를 하고 있다면 제거할 것. 물질을 삼켜서 노출된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 물을 조금 마시게 할 것. 노출된 사람이 구토를 하면서 울렁거림을 느끼면 위험하므로 그만둘 것. 의료요원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머리를 낮게 유지하여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지 않게 할 것.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 입을 통하여 아무 것도 주지 말 것. 만약 의식이 없으면, 회복자세(recovery position)를 취하게 하고 즉시 의료 조치를 받을 것. 기도 확보를 유지할 것. 옷깃, 넥타이, 벨트, 허리띠 등과 같이 조이는 것들을 느슨하게 할 것.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증상에 따라 치료할 것. 많은 양을 먹었거나 흡입했을 경우 해독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할 것.
- 특별 취급 : 특정한 치료법은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응급 처치자의 보호 :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흠 (fumes)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면, 구조대원은 적절한 마스크 또는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하면 구조 제공자가 위험할 수 있음. 오염된 옷을 벗기전에 옷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거나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해성 정보를 참조할 것. (11항)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 주변 화재에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할 것.
부적절한 소화제 : 알려진 바 없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화재 및 가열되면, 압력은 증가하며 용기는 폭발할 것 임.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분해산물은 다음과 같은 물질을 포함할 수 있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소방관은 적절한 보호 장비와 전면 정압 공기 공급형 호흡기가 있는 개인호흡기 (SCBA)를 착용할 것.

소방관을 위한 구체적인 주의사항 : 화재가 날 경우 즉시 모든 사람을 사고 부근으로부터 퇴거시키고 현장을 격리할 것.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주변지역을 벗어날 것. 필요하지 않거나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막을 것. 유출된 물질에 접촉하거나 밟지 말 것. 증기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않도록 할 것. 충분히 환기할 것.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유출된 물질이 분산되거나 유수가 토양, 수로, 배수 및 하수와 접촉하는 것을 피할 것. 제품이 환경 오염(하수, 수로, 토양, 공기)을 발생시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할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량 누출 : 위험이 없으면, 누출을 정지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이동할 것. 수용성인 경우 물로 희석시켜 닦아내시오. 비수용성인 경우, 비활성의 건조한 물질로 흡수시켜 적절한 폐기 용기에 담으시오. 인가된 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폐기할 것.

대량 누출 : 위험이 없으면, 누출을 정지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이동할 것. 유출물에 접근할 경우에는 바람을 등질 것. 하수, 수로, 지하 또는 밀폐된 장소로 유입시키지 말 것. 유출물을 폐수처리공장으로 보내거나 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할 것. 인가된 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폐기할 것. 오염 흡수 물질은 누출 제품과 동일하게 유해함. 누출된 물질을 비인화성 흡착 물질, 예를 들면 모래, 흙, 질석, 규조토로 흡착하여 용기에 담은 다음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방제 조치** :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8항 참조). 노출을 피할 것 - 사용 전에 전문 지시서를 입수할 것. 임신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눈 또는 피부 또는 의복에 닿지 않도록 할 것. 섭취하지 말 것. 증기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않도록 할 것.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물질이 호흡 유해성을 나타낸다면 충분한 환기를 하거나 적당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한 다음에만 사용할 것. 사용하지 않을 때는 원래의 용기나 호환되는 재료로 만든 승인된 대체용기에 밀폐하여 보관할 것. 빈 용기가 제품 잔류물을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유해할 수 있음. 용기를 재사용하지 말 것.
- 일반적 산업 위생에 관한 조언** : 이 물질을 취급, 저장, 가공하는 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는 것은 금지됨. 작업자는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기 전에 손과 얼굴을 씻을 것. 음식물 섭취 장소로 들어가기 전 오염된 의복 및 보호 장비를 제거할 것. 위생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는 8항을 참조.

-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아 할 조건을 포함함)** :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 보관할 것. 건조하고 서늘하며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여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며, 배합금지 물질 (10항을 참조) 과 음식 및 음료로부터 멀리 둘 것.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용기는 사용 전까지 밀봉해 둘 것. 개봉한 용기는 주의 깊게 다시 봉한 다음 누출을 방지 위해 세워 보관할 것. 라벨이 없는 용기에 보관하지 말 것. 적절한 봉쇄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 취급이나 사용 전에 섹션 10의 격리보관 물질을 확인하십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제어 변수

노출기준

성분명	노출기준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한국, 1/2020) STEL 15 분: 150 ppm. TWA 8 시간: 100 ppm.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한국, 1/2020) [다이프로필렌 글리콜메틸 에테르] 피부를 통해 흡수. STEL 15 분: 150 ppm. TWA 8 시간: 100 ppm.
CHROME(III) COMPLEX BLACK DYE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한국, 1/2020) [크롬(3가)화합물] TWA 8 시간: 0.5 mg/m ³ (Cr로).
2-부톡시에탄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한국, 1/2020) 발암성 2. 피부를 통해 흡수. TWA 8 시간: 20 ppm.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만일 작업자가 먼지, 흠,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작업을 한다면 폐쇄공정을 이용하고, 국소배출 및 기타 공학적 관리를 통하여 작업자가 공기 중의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권장 또는 규정된 한도 이하로 유지할 것.
- 환경 노출 관리** : 배기 또는 작업 공정 설비로부터의 배출이 환경 보호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배출물질을 허용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흠 세정기 (fume scrubbers), 필터, 또는 가공 시설에 대한 공학적 개조가 필요할 것임.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위해요소 및 노출 가능성을 근거로, 적절한 표준 또는 인증된 호흡기를 선택하시오. 호흡기는 호흡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하여 적절한 착용, 교육, 및 사용상의 기타 중요한 측면이 보장되도록 한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눈 보호** : 위해성 평가 결과, 액체가 튀거나 미스트, 가스, 분진에 대한 노출을 피해야 필요가 있으면 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보안경을 착용할 것. 접촉이 가능한 경우, 다음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평가가 좀 더 강한 수준의 보호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측면 차폐형 안전 안경.
- 손 보호** : 위험 평가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면, 화학 제품을 취급할 때, 승인 기준에 부합되는 내화학성, 불침투성 장갑을 언제나 사용할 것. 장갑 제조자가 명시한 변수를 고려하여, 사용중 장갑이 그 보호 특성을 계속 유지하는지 확인할 것. 장갑 물질에 대한 침투 시간이 장갑 제조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함. 여러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장갑의 보호시간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음.
- 신체 보호** : 제품을 취급하기 전에 인체 개인 보호 장비는 실제 작업 성능과 관련된 사고 위험을 기초로 선택하고 전문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 위생상 주의사항** : 이 화학 제품을 취급한 다음 작업 종료 때,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에, 손, 팔, 얼굴을 충분히 씻을 것. 의복에 잠재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염된 의복은 재착용 전에 세탁할 것. 눈 세척 장소와 안전 샤워 시설이 작업 장소와 가깝도록 확실히 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 물리적 상태 : 액체.
 - 색 : 검정.
- 나. 냄새** : 자료 없음.
- 다. 냄새 역치** : 자료 없음.
- 라. pH** : 7 - 9
- 마. 녹는점/어는점** : 기술적으로 측정할 수 없음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00 - 139°C (212 - 282.2°F)
- 사. 인화점** : 밀폐식: 101°C (213.8°F) [제품은 연소를 지속하지 못함.]
- 발화점** : 자료 없음.
- 아. 증발 속도** : 자료 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 자료 없음.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하한: 1.4%
상한: 10%
- 카. 증기압** : 1.8 kPa (13.8 mm Hg)
- 타. 용해도** :
자료 없음.
- 파. 증기밀도** : 자료 없음.
- 하. 밀도** : 1.008 g/cm³
-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해당 없음.
- 너. 자연발화 온도** : 207°C (404.6°F)
- 더. 분해 온도** : 해당 없음.
- 러. 점도** : 다이내믹 (상온): 70 mPa·s (70 cP)
동점도 (상온): 69 mm²/s (69 cSt)
동점도 (40°C (104°F)): 자료 없음.
- 흐름 시간(ISO 2431)** : 53 s (상온) [제트 직경: 4 mm]
- 머. 분자량** : 해당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 제품은 안정함.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일반적인 보관 및 사용 조건에서, 위험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 다. 피해야 할 물질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정상적인 보관 및 사용 조건에서 유해한 분해 산물이 발생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자료 없음.

잠재적 급성 건강 영향

- 흡입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 먹었을 때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 눈에 들어갔을 때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과다 노출 징후/증상

- 흡입 : 이상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음:
 태아 체중 감소
 태아 사망 증가
 골기형
- 먹었을 때 : 이상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음:
 태아 체중 감소
 태아 사망 증가
 골기형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이상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음:
 태아 체중 감소
 태아 사망 증가
 골기형
- 눈에 들어갔을 때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 독성

제품/성분명	결과	생물종	투여량	노출
아밀 알코올	LD50 경피 LD50 경구	토끼 - 숫컷 쥐	2860 mg/kg 3030 mg/kg	자료없음 자료없음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LD50 경피	토끼	13 g/kg	자료없음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LD50 경구 LD50 경피	쥐 토끼	6600 mg/kg 9510 mg/kg	자료없음 자료없음
N,N-dimethylisopropylamine	LC50 흡입 기체.	쥐	2500 ppm	4 시간
N,N-다이메틸아미노-2-에탄올	LD50 경구 LC50 흡입 기체.	쥐 쥐	684 mg/kg 1641 ppm	자료없음 4 시간

11. 독성에 관한 정보

2-부톡시에탄올	LD50 경구 LD50 경피 LD50 경구	쥐 쥐 쥐	2 g/kg 2010 mg/kg 917 mg/kg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	-------------------------------	-------------	-----------------------------------	----------------------

자극성/부식성

제품/성분명	결과	생물종	시험 결과	노출	관찰
아밀 알코올	눈 - 강한 자극원	토끼	자료없음	24 시간 5 uL	자료없음
	눈 - 강한 자극원	토끼	자료없음	81 mg	자료없음
	피부 - 보통정도의 자극성 물질	토끼	자료없음	24 시간 20 mg	자료없음
	피부 - 강한 자극원	토끼	자료없음	24 시간 3200 mg	자료없음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피부 - 약한 자극	토끼	자료없음	500 mg	자료없음
N,N-다이메틸아미노-2-에탄올	눈 - 결막 부종	토끼	3	자료없음	자료없음
2-부톡시에탄올	눈 - 강한 자극원	토끼	자료없음	5 uL	자료없음
	피부 - 약한 자극	토끼	자료없음	445 mg	자료없음
	눈 - 보통정도의 자극성 물질	토끼	자료없음	24 시간 100 mg	자료없음
	피부 - 약한 자극	토끼	자료없음	500 mg	자료없음

과민성

자료 없음.

CMR(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2-부톡시에탄올 CAS: 111-76-2 발암성 2

변이원성

자료 없음.

발암성

자료 없음.

분류

제품/성분명	OSHA	IARC	NTP	ACGIH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A4
CHROME(III) COMPLEX BLACK DYE	자료없음	3	자료없음	자료없음
2-부톡시에탄올	자료없음	3	자료없음	A3

생식독성

자료 없음.

최기형성

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이름	분류	노출 경로	표적 기관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분류 3	자료없음	마취작용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분류 3	자료없음	호흡기계 자극
N,N-다이메틸아미노-2-에탄올	분류 3	자료없음	호흡기계 자극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11. 독성에 관한 정보

이름	분류	노출 경로	표적 기관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분류 2	자료없음	자료없음

흡인 유해성

이름	결과
아밀 알코올	흡인 유해성 - 분류 2

만성 징후와 증상

만성 독성

자료 없음.

- 일반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 발암성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 변이원성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 최기형성 : 태아에게 손상을 줄 수 있음.
- 발생독성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 수정능력 영향 :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독성의 수치적 척도

급성 독성 추정치

경로	독성의 수치적 척도
경피	18640.91 mg/kg
흡입 (가스)	1506024.1 ppm
흡입 (증기)	1084.49 mg/l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제품/성분명	결과	생물종	노출
아밀 알코올	급성 EC50 714 mg/l 담수	물벼룩 - <i>Daphnia magna</i>	48 시간
	급성 LC50 180 ppm 해수	물고기 - <i>Menidia beryllina</i>	96 시간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만성 EC10 0.059 mg/l	물벼룩	21 일
	만성 NOEC 10 mg/l	물고기	35 일
N,N-dimethylisopropylamine	급성 LC50 >21100 mg/l	물벼룩	48 시간
	급성 LC50 ≥1000 mg/l	물고기	96 시간
N,N-다이에틸아미노-2-에탄올	EC50 5.38 mg/l	조류(藻類) - <i>Skeletonema costatum</i>	72 시간
	EC50 38.4 mg/l	물벼룩	48 시간
2-부톡시에탄올	LC50 31.6 mg/l	물고기 - <i>Leucidus idus</i>	96 시간
	만성 NOEC 1.73 mg/l	물벼룩	21 일
2-부톡시에탄올	급성 EC50 98.37 mg/l	물벼룩	48 시간
	급성 LC50 146.63 mg/l 담수	물고기	96 시간
	급성 EC50 >1000 mg/l 담수	물벼룩 - <i>Daphnia magna</i>	48 시간
	급성 LC50 800000 µg/l 해수	갑각류 - <i>Crangon crangon</i>	48 시간
	급성 LC50 1250 ppm 해수	물고기 - <i>Menidia beryllina</i>	96 시간

나. 잔류성 및 분해성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성분명	시험	결과	투여량	접종물
아밀 알코올	OECD 310 Ready Biodegradability - CO ₂ in Sealed Vessels (Headspace Test)	100 % - 쉬움 - 18 일	자료없음	자료없음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OECD 301E	96 % - 28 일	자료없음	자료없음
N,N-다이메틸아미노-2-에탄올	OECD 302C Inherent Biodegradability: Modified MITI Test (II)	60.5 % - 쉬움 - 28 일	자료없음	자료없음

제품/성분명	수중 반감기	광분해	생물 분해성
아밀 알코올	자료없음	자료없음	쉬움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자료없음	자료없음	쉬움
N,N-dimethylisopropylamine	자료없음	자료없음	쉽지 않음
N,N-다이메틸아미노-2-에탄올	자료없음	자료없음	쉬움

다. 생물 농축성

제품/성분명	LogP _{ow}	BCF	잠재적 생물 농축성
아밀 알코올	1.51	자료없음	낮음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1	자료없음	낮음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0.004	자료없음	낮음
N,N-다이메틸아미노-2-에탄올	-0.55	자료없음	낮음
2-부톡시에탄올	0.81	자료없음	낮음

라. 토양 이동성

토양/물 분배 계수(K_{oc}) : 자료 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가능한 폐기물 생성을 피하거나 최소로 할 것. 이 물질과 용액, 부산물은 언제나 그 지역의 환경보호법과 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이 나 쓰고 남은 제품은 허가된 폐기물 외주업자를 통하여 처리할 것. 폐기물은 해당 지역의 모든 관련 정부기관의 의무사항을 준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절대로 하수로 폐기되어서는 안됨. 사용된 포장용기는 재활용 되어야 함. 소각 또는 매립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함.

13. 폐기시 주의사항

나. 폐기시 주의사항 : 제품 및 그 용기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세척되거나 행귀지지 않은 빈용기를 취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함. 빈 용기 또는 라이너에 제품 잔류물이 남아 있을 수 있음. 유출된 물질이 분산되거나 유수가 토양, 수로, 배수 및 하수와 접촉하는 것을 피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IMDG	IATA
가. 유엔 번호	규제되지 않음.	규제되지 않음.
나. 유엔 적정 선적명	규제되지 않음.	규제되지 않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규제되지 않음.	규제되지 않음.
라. 용기등급	규제되지 않음.	규제되지 않음.
마. 환경 유해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사용자의 구역 내에서의 운반: 항상 밀폐 용기에 담아 똑바로 세워 안전하게 운반할 것. 사고가 발생하거나 누출되었을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품을 운반하는 사람에게 주지시킬 것.

IMO 협정에 따른 벌크 운송 : 자료 없음.

이 제품에 대한 실제 배송 설명은 자재 부피, 용기 크기, 이송 방법 및 면책 사용 여부 또는 적용되는 규정의 예외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섹션 14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이 제품과 관련하여 가능한 배송 설명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배정 정보에 관해서는 배송 전문가 또는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 없음.
(제조 등의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 없음.
(제조 등의 허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다음 성분들은 작업노출기준이 있음: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CHROME(III) COMPLEX BLACK DYE
2-부톡시에탄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없음.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없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 12]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종류 : 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11항(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크롬 및 그 화합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금지물질) : 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허가 대상(한국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제25조) : 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유독물질의 지정) : 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한물질) : 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사고대비물질) :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규제되지 않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관련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본 제품에 함유된 성분들은 적법하게 등록 또는 신고됨.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최초 작성일자 : 9/23/2024

버전 : 14

나. 기타

이전 호와 변경된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품 관리 및 규제 준수.

16. 그 밖의 참고사항

- 약어 해설 : ATE = 급성독성 추정치
 BCF = 생물 농축 계수
 GH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IATA = 국제 항공 운송 협회
 IBC = 중형산적 용기
 IMDG =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
 LogPow = 물/옥탄올 분배계수의 로그값
 MARPOL =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8년 의정서 ("Marpol" = 해양오염물질)
 N/A = 자료 없음
 UN = 국제 연합

주의

이 제품은 산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SDS) 콘텐츠는 발행 당시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엑솔타 코팅 시스템즈와 LLC, 자회사 또는 계열사 (이하 엑솔타)가 새로운 정보를 수신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SDS에는 공급업체가 엑솔타에 제공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장 최신 SDS를 참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SDS에서 제공되는 다음 예방 조치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제품의 안전한 취급, 사용 및 폐기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사용 전 엑솔타 제품 사용자는 모든 제품 관련 정보를 정독해야 하며 용도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률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한, 엑솔타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상업성에 대한 암묵적인 보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본 SDS의 정보는 섹션 1 식별에 명시된 특정 제품에만 관련되며 기타 재료 또는 특정 공정에 활용하는 사례에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본 제품을 기타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한 SDS를 정독하고 이해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2 엑솔타 코팅 시스템즈와 LLC 및 모든 계열사. 모든 권한 보유. 사본은 엑솔타 코팅 시스템즈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작할 수 있습니다.